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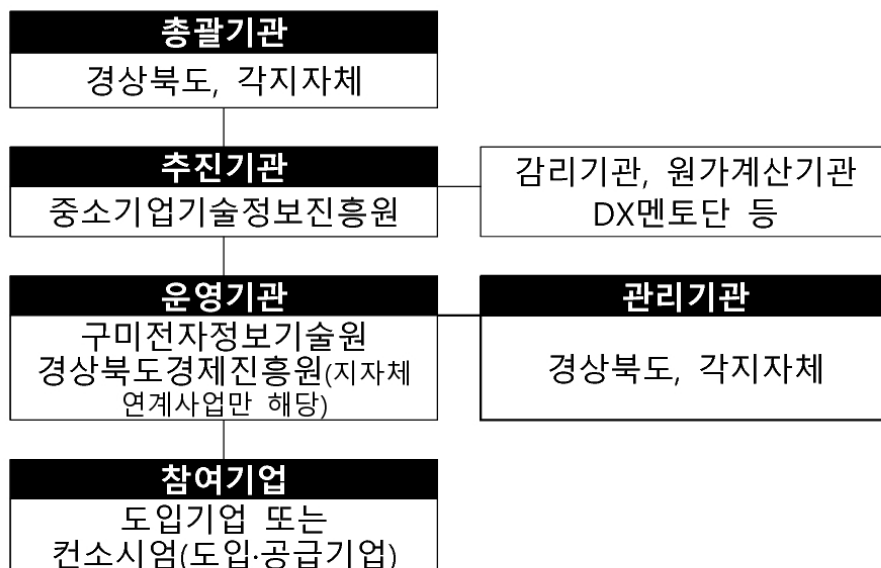
2026년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 재공고(3차)

식품 제조·가공업체 생산 제조현장의 첨단화로 안정적인 식자재 관리, 스마트 식품생산, 품질관리기반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식품 산업 분야 스마트 제조 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2026년 「푸드테크 스마트 제조 기반 구축」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경북 식품업 중소·중견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고도화 수준의 스마트공장을 지원하여 데이터 활용과 품질 중심의 제조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식품 제조업으로 성장도모
- (지원대상) 경북 지역내 식품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규모) 28개사(기초 28개사)
- (추진체계)



- (관리기관) 시·군 지자체, 운영기관, 기업 간 협력 체계를 조율하여 사업 추진의 통합성과 협업 체계 강화
- (추진기관) 사업의 총괄관리 및 운영
- (운영기관) 참여기업(도입·공급기업) 모집, 신청기업 선정평가, 과제추진점검, 정부지원금 지급·정산 등
-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동 지원사업을 수행
 - * 식품업 스마트공장 구축 도입을 희망하여 사업참여 신청 후 수행·전담 기관의 평가를 거쳐 최종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 (공급기업) 도입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솔루션 구축 관련 사업계획서 작성 협력 및 이에 따른 솔루션 구축,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

2. 사업 지원계획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구축) 식품업의 식자재 관리, 스마트 식품생산, 품질관리기반 구축으로,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와 연동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 제조 데이터 수집·저장 인프라 구축 등 포함한 기초 단계
 - * 스마트공장 식품업 분야 등급별 기술수준 정의 [붙임 1]참조
- (기초) 기초단계 식품업 스마트공장 식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 (사업화) 도입 및 공급기업과의 매칭으로 식품 설계·생산공정 개선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으로 식품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성과를 극대화 지원
-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지역 식품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기업을 기반으로 생산·품질 향상과, 기업 브랜드 강화로 기업 정책자금 단계별 맞춤 지원프로그램 연계지원

□ 지원조건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유형	지원기간	지원한도	지원비율	구축목표수준 ¹⁾
기초 ²⁾	최대 6개월	최대 0.6억원	지자체 70% 이내	기초수준 스마트공장 구축
기초 (동일수준)	최대 6개월	최대 0.3억원	지자체 70% 이내	기초(동일수준)

1) 구축목표 수준은 KS X 9001-1(스마트공장 기본개념과 구조) 표준 기준

2) 스마트공장 식품업 분야 등급별 기술수준 정의 [붙임1 참조]

※ 스마트공장구축 우대가점부여 : 최대 2개까지 인정 [붙임2 참조]

※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연계지원 [붙임4 참조]

- (수요 발굴) 경상북도 11개 시·군 및 운영기관에서 직접적인 수요 발굴 및 체계적인 기업 관리로 고도화 진입 유도
- (기업 관리) 점검·평가 시 지자체 주무관이 현장 방문하여 지방비 사용내역과 사업 완성도를 확인하고, 점검 데이터를 기업관리에 활용
- (추진 절차)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추진절차 준용
- (전문 멘토링)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전문 교육) 중소벤처기업 연수원 누리집의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의 데이터 분석·제조 자동화·운영관리 중 선택 교육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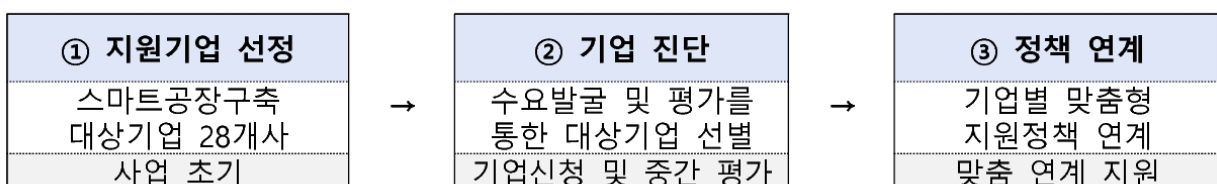
○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지원예산 (억원)	비고
정책 자금 지원	<p>[정책자금 지원] 경쟁력 강화 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기존 제조업체 등 생산설비에 소요되는 자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 금리 2.5%(변동), 8억원(시설)/3년거치, 5년 균등분할 * 사업장 신축 및 부지매입비, 공장매입비, 사업장 증·개축, 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총용자액 600억 규모로 운영 중	지원 예산 범위 내 일부 연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p>[시제품 제작 지원] K-푸드 수출향 제품·패키징 샘플 제작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제품개발, 시제품/포장재(파우치/박스/스티커) 제작 - 최대 4백만원, 사업기간 6개월 	0.2	
제품인증 평가지원	<p>[인증평가지원] K-푸드 수출대응 시험·표시 적합성 평가비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규격 '인증 취득' 비용, 수출 적합성 검토 인증비용 - 최대 4백만원, 사업기간 6개월 	0.4	
기업 경쟁력 판로 지원	<p>[AI 활용 마케팅 및 수출전략 지원] 온라인 마케팅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시장 진입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진흥원 사업참여 유도를 통해 연계 * 제품개발, 온라인입점 및 판촉 지원, 라이브커머스(AI활용) 등 * 경북 대표 브랜드로 기업 맞춤형 B2C 지원프로그램 운영 	0.1	
AI 기반 표준화 연계	<p>[데이터 표준화 및 고도화] 생산·품질·원재료 시스템 플랫폼 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S·POP에서 발생하는 생산·품질·설비 데이터 코드 표준화 - 빅데이터·AI 활용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후 예지보전 솔루션 - 스마트공장 기능도 활용 및 고도화 플랫폼 컨설팅 	0.4	
박람회 참가 지원	<p>[식품산업전 운영지원] 지역 식품산업전 행사 참가 및 운영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푸드테크 기반 축제 참여(라면축제, 푸드&테크페스티벌) - 행사 기반 체험참여 프로그램 지원 및 시식, 쿠킹클래스 운영지원 - 지역 농식품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0.9	

★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기업지원사업을 활용한 스마트공장 참여 기업 연계지원

※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 기업 정책자금 지원 등 6개 사업 [붙임4 참조]

※ 사업운영요령 (지자체부분) 재정을 통해 지자체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기업지원사업 도입기업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3. 신청기간 · 방법 및 자격 등

□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6. 5. 11.(월) ~ '26. 5. 29.(금) 17시까지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 등에 따라 원활한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3일 전에 온라인 신청 완료 요망 (접수 마감일 17시 이후 신청·제출·수정 불가)
- ☞ 공고 미숙지, 공급기업 미등록 등으로 최종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방법)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 신청

- ☞ 신청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smart-factory.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 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필수

○ (제출서류) 사업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공통 제출 (도입·공급기업)	- 사업 계획서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자 등록 증명원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도입기업 제출	-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각 1부('22~'24) - 종된사업장에 구축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제출 - 최근 년도('25)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서(해당시, 직접수출만 인정)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에서 발급 - 가점 증빙 서류(해당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

* 관련 양식은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의 '알림/참여마당-자료실' 참고

□ 신청 자격

- (도입기업) 국내 식품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 식품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제조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가능하며 증빙서류(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제출 필요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로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
 - * (공급기업 Pool 등록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 알림/참여마당 - 공지사항'에서 "공급기업 Pool 등록 안내(1077번 게시글)" 참조
- (지원 제외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 휴·폐업중인 기업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을 이미 수행 중인 기업 [붙임4] 참고

- ※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협약 체결 등의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평가 및 추진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스마트공장 기업선정 절차 [붙임5] 참고

- (서면 평가)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지원 적정성 및 도입·공급기업 역량 등 평가
 - * 지역별 신청 과제수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을 통해 수준확인 받은 기업은 서면 평가 면제

- (기술성 평가) 사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목표·방식, 달성가능성 및 기업역량 등 대면 평가
- (현장 확인 및 원가계산)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일치여부, 신청 가점 등의 확인 및 사업비 계상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사업비 조정
 -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일부 예외 인정* 단, 공장설립(계획)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 검토를 통해 기간 내 구축 가능 여부 확인
- * (예외 인정항목)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 보유설비 정상가동 여부
- (최종 선정) 선정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지원 과제 확정

※ 단계별 평가 일정, 결과 등은 운영기관(구미전자정보기술원(푸드테크제조혁신사업단))에서 안내 예정

□ 추진 절차



* ⑩최종평가결과 "보완"인 경우 '⑪집중A/S' 및 '⑫재평가' 진행

5. 유의사항

☞ 세부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신청 및 사업수행

□ 신청·접수 관련

- (컨소시엄 구성)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 (구축 목표 설정) 기존 구축한 스마트공장 수준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
 - ※ (이전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확인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에서 조회 ('20년 이후 구축수준 중 높은 수준을 적용)
- (보안대책 수립) 구축 솔루션 및 설비의 안정성 보장, 기업데이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솔루션 구축·연동 등 보안 대책수립 필수

□ 경상북도 시·군별 사업량 배정현황

시군		목표 사업량(개사)
		기초
합 계		28
1	포항시	7
2	경주시	2
3	안동시	3
4	구미시	3
5	영주시	1
6	영천시	3
7	문경시	2
8	경산시	4
9	의성군	3
10	칠곡군	2
11	예천군	1

* 경상북도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목표 사업량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 이수

-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은 “스마트공장 교육”을 이수하고 중간 점검 또는 완료 보고 시 수료증을 필수 제출
- (교육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 사업처

<스마트공장 교육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공급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4명]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방지교육, 우수사례, 사업비 사용법 등 * 협약 후 중간점검 전까지 수료 후, 중간보고서 제출시 수료증 첨부 - 비용 : 온라인교육 무료수강(https://ssup.kosmes.or.kr)
기술교육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도입기업(대표자 및 임원, 실무자)[총 2명] - 내용 : ①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완료보고서 제출 시 수료증 첨부 - 집합교육으로 비용 발생

* 교육 상세내용 및 일정은 협약 체결 후 추진기관·운영기관에서 별도 안내 예정

□ 기타 사항

- 자격·유형·지역 등의 분류에 맞게 신청하여야 하며, 오기재·누락·허위기재 등의 사항 발견 시 평가·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협약 후에도 협약해약 및 제재 조치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담당자의 연락처 오류 여부 필수 확인

6. 추진근거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제2023-80호, '23.8.7)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및 세부 관리기준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담당 기관

구분	주체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리 -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평가 등
운영기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 과제 신청 및 접수, 선정평가 운영, 과제 관리 등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자체 연계사업만 해당)	- 지자체 특화프로그램 연계지원
참여기업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또는 도입기업	- 스마트공장 구축

7. 문의기관

담당기관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시행계획 공고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추진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운영기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신청·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문의처 참고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사항은 '사업관리시스템 - 전체메뉴(우상단) - 마이페이지 - 고객센터 - SR요청' 으로 문의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mart-factory.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lfqd

□ 운영기관 문의처

기관명	연락처	주소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첨단푸드테크연구센터)	054-479-2234	경북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 1038번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2-2989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수준구분		수준요약	상세내용	지원유형
레벨 0	미적용	수기작성	①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 Excel 정도 활용	스마트공장 미적용
레벨 1~2	기초	생산정보 디지털화	① 공장 내 아날로그 생산정보의 디지털화(전산데이터) 수준 - 구매·재고 등 엑셀수기 관리 데이터를 시스템 전산입력 ② 제품의 생산이력 관리 <← 공정물류관리수준(POP)	기초
레벨 3	중간1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① 생산설비, 공정, 자재 및 제품정보의 실시간 수집 및 분석 수준 - 생산정보를 통해 품질분석이 가능, 효율적인 생산계획 수립 ② 수집/분석한 정보를 이용해서 의사결정(사람) 실시	고도화1
레벨 4	중간2	시스템을 통한 생산공정 제어	① 수집/분석된 생산정보를 토대로 원인과 해결책을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제어하여 생산 최적화를 하는 수준	고도화2
레벨 5	고도화	맞춤형 유연생산 지능형공장	①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물리 시스템(CPS)기반의 완전한 지능형 공장 ② 고객의 요구에 즉시 생산 배송하는 맞춤 서비스 공장	

핵심 분야	등급 (점수)	등급별 기술 수준 정의
식자재 관리	레벨 5 (≥950)	식자재 자동화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레벨 4 (850~950)	식자재 신선도·맛·색상·향 및 수급 관리시스템 구축
	레벨 3 (750~850)	식자재 정보(재배조건, 출하일자, 원산지, 보관 기한 등) 자동인식 및 기록 관리
	레벨 2 (650~750)	식자재 정보(재배조건, 출하일자, 원산지, 보관 기한 등) 시스템 기록
	레벨 1 (550~650)	식자재 정보(재배조건, 출하일자, 원산지, 보관 기한 등) 수기 기재
	레벨 0 (< 550)	단순 냉장/냉동 보관
생산 관리	레벨 5 (≥950)	서비스로봇·ICT기반 대용량 완제품 식품 제조를 위한 자율 공정 시스템
	레벨 4 (850~950)	완제품 식품 제조 Recipe 균일화를 위한 공정 최적화
	레벨 3 (750~850)	Recipe 제조 정밀도 향상을 위한 식품 제조 공정 분석
	레벨 2 (650~750)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식품 제조 모니터링
	레벨 1 (550~650)	식품 제조업자 직접 현장 관리 방식의 식품 제조 현장 탐색
	레벨 0 (< 550)	전통 방식의 식품 제조
품질 관리	레벨 5 (≥950)	완전 자동화 품질관리 및 수집 Data를 활용한 품질예측 시스템
	레벨 4 (850~950)	ICT센서가 적용된 스마트 모니터링 기반의 식품 품질관리 시스템
	레벨 3 (750~850)	공기 조화 연동/가스 농도 제어 및 일체형 자동화 인라인 품질검사 시스템
	레벨 2 (650~750)	온습도계/가스센서를 이용한 Data Log Data 조회 및 광학기기활용 이물질 분석
	레벨 1 (550~650)	휴대용 온습도계/가스센서를 이용한 실내 환경 측정 및 육안 품질 검사
	레벨 0 (< 550)	식품 제조업자 육안 품질 검사 및 관리 방식

붙임 2**스마트공장구축 지원사업 가점 항목(6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가점 항목(6개)**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스마트공장교육	· 중소벤처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또는 CEO·임원 대상 스마트화 리더십 교육 이수기업	'22년~'25년 교육과정 이수증 (공고일 이전까지 이수 완료 必)
2	DX컨설팅 진단기업	· 경상북도와 (재)경북테크노파크가 지원하는 「2024년 경북 디지털전환 컨설팅 사업」의 1단계 “역량수준진단” 완료기업	수준진단 결과보고서
3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을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4	스마트 제조 표준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사업계획서 (2.6 표준연계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5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6	「글로벌강소기업 1,0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붙임 3

지역 특화프로그램

□ 사업내역

★ 운영기관 및 참여기관 기업지원사업을 활용한 참여 기업 연계지원

지원 유형	지원 내용	예산 (억원)	지원 규모 (개사)
정책 자금 지원	<p>[정책자금 지원] 경쟁력 강화 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기존 제조업체 등 생산설비에 소요되는 자금 장기저리, 융자 지원 * 금리 2.5%(변동), 8억원(시설)/3년거치, 5년 균등분할 * 사업장 신축 및 부지매입비, 공장매입비, 사업장 증·개축, 생산설비 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경북 경제 진흥원 사업 연계	지원 예산 범위 내 일부 연계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p>[시제품 제작 지원] K-푸드 수출향 제품·패키징 샘플 제작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 제품개발, 시제품/포장재(파우치/박스/스티커) 제작 - 최대 4백만원, 사업기간 6개월 	0.2	
제품인증 평가지원	<p>[인증평가지원] K-푸드 수출대응 시험·표시 적합성 평가비용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규격 '인증 취득' 비용, 수출 적합성 검토 인증비용 - 최대 4백만원, 사업기간 6개월 	0.4	
기업 경쟁력 판로 지원	<p>[AI 활용 마케팅 및 수출전략 지원] 온라인 마케팅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시장 진입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진흥원 사업참여 유도를 통해 연계 * 제품개발, 온라인입점 및 판촉 지원, 라이브커머스(AI활용) 등 * 경북 대표 브랜드로 기업 맞춤형 B2C 지원프로그램 운영 	0.1	
AI 기반 표준화 연계	<p>[데이터 표준화 및 고도화] 생산·품질·원재료 시스템 플랫폼 컨설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ES·POP에서 발생하는 생산·품질·설비 데이터 코드 표준화 - 빅데이터·AI 활용 기반으로 스마트공장 구축후 예지보전 솔루션 - 스마트공장 기능도 활용 및 고도화 플랫폼 컨설팅 	0.4	
박람회 참가 지원	<p>[식품산업전 운영지원] 지역 식품산업전 행사 참가 및 운영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푸드테크 기반 축제 참여(라면축제, 푸드&테크페스티벌) - 행사 기반 체험·참여 프로그램 지원 및 시식, 쿠킹클래스 운영지원 - 지역 농식품 활용 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0.9	

- (맞춤형 자금지원)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특화 프로그램의 장기 저리 융자 및 보조금 지원** 과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설비 구입, 공장 신축·개보수, 생산설비 도입을 위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성과 기반 추가지원** :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와 보조금을 병행 지원
- (시제품제작 지원)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제품/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수출향 시제품 소량 제작(레시피 확정·관능/시장 테스트용 샘플 배치) 및 수출용 포장(파우치/필름/트레이) 등 포장재 샘플 제작 및 규격(중량·사이즈) 확정**
- (제품인증평가 지원) **수출대응 시험·표시 + 해외규격 인증 일부지원으로 해외규격 '인증 취득' 비용, 수출 적합성 검토 인증비용 및 수출대응 품질시험(미생물/이화학/영양성분 일부), 표시사항(라벨) 적합성 검토 및 해외 규격(할랄,코셔,FSSC) 인증비용 일부지원**
- (마케팅 및 판로)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참여기업 제품의 특성과 타깃 시장에 맞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쿠팡, 네이버, 11번가 등)으로 식품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우수성과 기업 기반** 디지털 광고와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으로 제품 홍보 강화
 - 온·오프라인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마켓별 입점지원
 - 온라인 기획전 운영, 유통채널 협력상품개발,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
- (AI기반 표준화) **구축 이후 데이터 활용 고도화를 위한 표준화·컨설팅·AI 적용 기반 패키지 지원**으로 생산·품질·설비·원재료 데이터 코드/항목 표준화(스키마) 및 정확성 개선 및 예지보전·이상탐지·품질예측 등 AI 적용용 데이터 가공/특성화 지원, 플랫폼 고도화 로드맵 및 단계별 적용 가이드 제공
- (박람회 참가)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한 홍보·체험·관측 연계 지원으로 **식품산업전·푸드테크페스티벌 등 부스 운영 및 시식체험 지원 및 쿠팡클래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인지도 제고, 지역 농식품 스토리 연계로 판로 확대(현장→온라인 전환)

붙임 4

동시수행 제한사업 목록

동시 수행 제한사업 목록(기존사업 수행중인 경우)

사업명(지원유형)	2022	2023	2024	2025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대중소상생형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 디지털협업공장				
-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자율형공장				
- 제조혁신 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 음영이 칠해진 해당 연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26년 정부형 스마트공장과 동시수행 불가
 ※ 단, 집중A/S 기간이거나 사업완료(성공 판정)된 경우 신청 가능

동시 지원·선정 제한사업 목록('26년 신규 신청인 경우)

26년 사업명	내용
① 정부형 스마트공장 (점프업 및 레전드50+, 지역특화형 포함)	①~⑦ 사업간 동시 수행 불가
② 자율형공장	
③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AI트랙 제외)	
④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⑤ 디지털 협업공장	
⑥ R&D성과확산 스마트공장	
⑦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⑧ 제조AI특화(자율형공장 AI트랙)	①~⑥ 사업 중 하나와 ⑧, ⑨ 사업 동시수행가능 ※ 단, ⑧제조AI특화 스마트공장과 ②자율형공장은 동시 수행 불가
⑨ 제조혁신자동화(제조로봇, 제조기반)	
⑩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①~⑨ 진행중인 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기 구축 스마트공장에 한해 가능(단, 유무상 AS진행 중 신청불가)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사업 목록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①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제조로봇도입 자동화공정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②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③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붙임 5

스마트공장 기업선정 절차

□ 기업 선정절차

- 참여대상 : 경기도내에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절차 : ①접수→②요건검토→③대면평가→④현장확인→⑤최종선정

단계	주요 추진내용	수행주체
신청 ·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검토 -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도입·공급), 사업자등록증명원(도입·공급), 재무제표(최근년도), 4대보험 가입자명부(도입), 원천징수부 또는 급여명세서(도입) 등 	신청기업
기술성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성 평가 항목 - 신청자격의 적정성, 사업지원의 필요성, 신청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신청과제의 수행능력,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사업비 구성, 구축기간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운영기관
사업기획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및 사업기획지원 - 선정평가 통과 기업 대상 	운영기관
자문위원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업 스마트공장 구축·운영지도 컨설팅지원 - 선정평가 통과 기업 대상 	운영기관
현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현장 방문 심사 	운영기관
수시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원 내부 기업컨설팅지원 - 기업 맞춤형 공정환경요소 분석 등 	운영기관
중간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보고서 제출(중간실태 조사표 포함) 	도입기업
최종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서 제출 	도입기업
완료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서 검토 - 사업 목표 달성도, 시스템 운영현황 등 	운영기관
(사후관리) 최종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완료 보고서 검토 - 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시스템 활용현황, 개선필요 사항 및 총사업비 집행여부 평가 	운영기관
(사후관리) 성과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발표를 통한 우수 사례 발굴 및 기업간 교류 기회 제공 	운영기관 도입기업

□ 서면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 (30점)	◦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 스마트공장의 특성을 적용할 제조공정의 보유 또는 운영할 계획이 있는가?	15
	◦ 스마트공장 구축 시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15
지원 적정성 (35점)	◦ 공정개선 및 스마트공장 고도화 목적과 부합하고 있는가?	15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데이터에 기반하여 생산공정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지능형공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가?	10
공급기업 역량 (15점)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15
도입기업 역량 (20점, 정량평가)	◦ 매출액 증가율	5
	◦ 영업이익 증가율	5
	◦ 부채비율	5
	◦ 수출실적 여부	5
총 점		100

※ (참고) 도입기업 역량 배점기준

항목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출액증가율	12%이상	12%미만~9%이상	9%미만~6%이상	6%미만~3%이상	3%미만
영업이익증가율	10%이상	10%미만~7.5%이상	7.5%미만~5%이상	5%미만~2.5%이상	2.5%미만
부채비율	60%미만	100%미만~60%이상	140%미만~100%이상	180%미만~140%이상	180%이상
수출실적	○	-	-	-	X

- * 재무현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증가율(1점), 영업이익 증가율(1점), 부채비율(1점) 부여
- * '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여
- * '25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3점), 영업이익 증가율(3점), 부채비율(3점) 부여

□ 기술성 평가지표

평가 항목		배점
도입·공급 기업 역량 (35점)	◦ 상시 종업원 수, 매출액, 수출액(해당되는 경우), 영업이익, 부채 비율 등 기업 현황이 양호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인가?	10
	◦ 도입기업의 현재 모습(현행업무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도입기업의 자부담비율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확장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10
	◦ 공급기업의 사업수행 전문성(기술력) 및 투입인력(개발PM 등)의 적정성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5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설정 타당성(20점)	◦ 스마트공장 구축 "주요 내용"의 범위가 명확하고, "목표수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는가?	10
	◦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공정별 스마트화 추진 목표"의 내용이 데이터 수집·분석 및 공정통합 관리 등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목표수준" 달성에 적합한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내용 적절성 (20점)	◦ "데이터집계 포인트"의 제시가 도입기업 제조공정도를 토대로 각 공정별 수집 대상 데이터의 종류와 집계방법(자동, 반자동, 수동) 등을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10
	◦ "솔루션 기능 구성도"가 도입기업 업종의 목표수준에 부합되는 기능으로 적절히 제시되었는가?	10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성과지표 설정이 타당한가? (구축목표 - 구축내용 - 성과지표 간 내용 연결, 기존수치/목표수치의 근거제시, 지표 계산식 제시, 기대효과금액 등의 적절성)	10
	◦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과 "지원계획" 등에서 도입기업/공급기업의 투입인력이 사업수행에 적절한가?	10
	◦ "추진일정 총괄표"와 "산출물 예정 목록"간의 단계가 일치하며, "산출물 예정 목록"에서 각 단계별 필수 산출물이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5
가점(5점)	-	(5)
합 계		100

※ 동점 과제는 '①가점 제외한 총점, ②구축내용 적절성, ③구축목표설정 타당성, ④구축목표 달성가능성, ⑤기업역량'의 점수가 높은 과제 순으로 선정

※ (참고) 가점 항목(5개)

구분	항목	세부 내용	제출 서류
1	수준확인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를 통해 스마트화 수준 확인을 받은 기업	수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인정)
2	스마트 제조 표준	· 스마트제조 표준* 적용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표준연계 구성도, 범위 등 표준 적용 관련 내용 명시 * 적용 표준 : ① OPC-UA (IEC 62541) ② AAS (IEC 63278)	사업계획서 표준연계 항목 작성 * 기술성평가에서 반영여부 확인
3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우수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연속 6개월간 스마트 공장 솔루션 가동률 100%인 기업 ('21년 이후 구축기업 중 월 가동일 20일 이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가동률 확인
4	「글로벌강소기업 1,000+」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된 수출 중소기업	「글로벌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5	SaaS 솔루션 도입	· SaaS 형태*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기업 * SaaS솔루션 : 클라우드 인프라 내 멀티테넌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CSAP(SaaS유형) 인증서 · 클라우드 서비스 확인서 및 상세 정보 캡처(KAC) * 인증받은 솔루션이 SaaS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정보 화면

※ 가점 항목당 3점, 최대 5점 가점 부여(최대 2개까지 인정), 가점은 사업 신청마감일까지 유효한 서류를 제출한 기업만 인정

현장 확인 항목

확인 항목		확인여부
사업계획서 대조·확인	· 구축 대상 제조공장의 정상가동 여부(휴·폐업 등)	적/부
	·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공정, 설비 등 일치 여부	적/부
	· 기 보유설비 이상유무(정상가동 등)	적/부
가점여부	· 신청가점 사실여부 확인 및 반영	-

참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계상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